

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이유서

제출일자 : 1993. 2. 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의안번호	164
------	-----

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의 구기 및 문장 등의 내용이 부산시 시기조례의 내용중 기관 명칭만 변경하고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지역특성 등 자치구로서의 상징성이 전혀 표현되지 아니하여 우리구를 상징하는 구 상징마크가 제정됨에 따라 구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)
- 구기의 모양과 구의 문장 및 휘장 개정

3. 개정조례안 : 별 첨